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2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9 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12.9.(월)	담당부서	해외투자과
담당과장	김정화 과장(044-203-4070)	담 당 자	진성익 사무관(044-203-4093)

"유턴법 개정 · 공포, 내년 3월 시행"

-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·정보통신업 추가
- 국·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

□ 정부는 **12.10(화) 개정된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**(이하 「유턴법」)**」을 공포***하였다고 밝혔다.

* 국회 의결(11.29), 국무회의 의결(12.03), **공포**(12.10), **시행**('20.3.11, 예정)

○ 금번 유턴법 **개정은 지난해 정부가** 발표한 **"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*"**('18.11) **후속조치의 일환으로,**

○ 유턴 대상업종에 **지식서비스업** 및 **정보통신업**을 **추가**하고, 유턴기업에 대한 **국·공유지 사용특례** 허용 등 **입지지원**을 **강화**할 예정이다.

<유턴법 개정 내용>

구분	기존	개정후
업종확대	· 제조업	· 제조업 · **정보통신업*** · **지식서비스산업****
국·공유지 사용특례	-	· **국·공유지 수의계약** 허용, **장기임대**(50년), **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**(최대 50%)
창구 일원화	· 코트라內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	·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**지원 창구 일원화**

*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(13개) : 소프트웨어 개발/공급업, 방송업, 공영우편업 등
**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(34개) : 소프트웨어 개발/공급업, 전기통신업, 영화 · 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, 오디오물출판업, 정보서비스업, 컴퓨터프로그래밍, 엔지니어링

□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**유턴기업 지원대상**이 제조업에서 **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업**(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)**까지 확대**된다.

○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**제조업**에 해당하는 **기업만 지정**될 수 있었으나,

○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**기존 제조업 외**에 **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**하여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**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**이 가능할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□ 유턴기업에 대한 **국·공유지 사용특례**도 **신설**된다.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**국·공유지 수의계약** 허용, **장기임대**(50년), **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**(최대 50%)등이 가능해진다.

○ 유턴기업에 대한 **입지지원**을 **외국인투자 수준**으로 **확대*함으로서,** 유턴기업의 **국내투자 비용부담**을 **완화하는데 도움**이 될 것으로 **기대된다.**

* 지금까지는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,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,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·공유지 사용특례부여 가능

□ 마지막으로 **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**을 **확대**하여 **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**가 **일원화**된다.

○ 기존에는 **해외진출기업**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**선정 및 지원**을 받기 위해선 **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*을 접촉·방문해야 했으나,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**에 **서류 접수·처리기관 이송** 등 **민원사무 처리 규정**을 **신설**하여 **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**이다.

* 유턴기업 신청(코트라), 입지·설비보조금(지자체), 고용보조금(고용센터) 등

□ **산업부**는 금번 **유턴법 개정을 계기**로 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**유턴수요가 증가**할 것으로 **기대**하면서,

○ 금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**유턴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***을 **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**('20.3.11일)에 **맞추어 완료**할 예정이다.

* 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마련,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마련 등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(☎ 044-203-40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현황

<table>
<tr><th></th><th>항목</th><th>내용</th><th>진행상황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❶ 대상 확대</td><td>업종확대</td><td>제조업 + 지식서비스업 추가</td><td>유턴법 개정안 공포('19.12.10)</td></tr>
<tr><td>생산제품 범위 확대</td><td>세분류(4단위) → 소분류(3단위)로 동일성기준 완화</td><td><금번개정 내용> 유턴법 시행령 8.13 시행</td></tr>
<tr><td>축소요건 완화</td><td>해외사업장 50% → 25% 이상 축소로 완화</td><td><금번개정 내용> 유턴법 시행규칙 8.16 시행예정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❷ 인센티브 강화</td><td>입지·설비 보조금</td><td>· 지원요건 완화(상시고용 30인 → 20인)
·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
· 지급대상 확대(중소·중견 → 대기업)</td><td>보조금 고시 개정 완료</td></tr>
<tr><td>입자설비보조금 담보부담 완화</td><td>담보수단 다양화
*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요구 없는 지급보증서 발급</td><td>산업은행 지급보증 상품 출시
(현금예치 無, 대신 신용도 낮은 기업(BBB이하) 보증료율 서울보증보험에 비해↑)</td></tr>
<tr><td>고용 보조금</td><td>지원기간 확대 (1년→2년)</td><td>고용창출장려보조금 개정 완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세제 감면</td><td>법인세,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
<table>
<tr><th></th><th colspan="2">대기업</th><th colspan="2">중소·중견기업</th></tr>
<tr><th></th><th>청산양도</th><th>축소</th><th>청산양도</th><th>축소</th></tr>
<tr><td>법인세</td><td>O</td><td>×→O</td><td>O</td><td>O</td></tr>
<tr><td>관세</td><td>×→O</td><td>×→O</td><td>O</td><td>O</td></tr>
</table></td><td>조특법 개정 완료('18.12.24)</td></tr>
<tr><td>농어촌특별세(조세감면액의 20%) 비과세</td><td>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</td></tr>
<tr><td>입지 지원</td><td>국·공유지 사용 특례 등</td><td>유턴법 개정안 공포('19.12.10)</td></tr>
<tr><td>정책사업 우대</td><td>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(중기부),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(금융위) 우선 지원 등</td><td>중기부·금융위 등에서 시행 중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❸ 지원체계 간소화</td><td>절차 간소화</td><td>각 지원제도 신청·심사 간소화</td><td>유턴법 개정안 공포('19.12.10)</td></tr>
<tr><td>신청기한 간소화</td><td>보조금 신청 기한 간소화(3개 폐지, 3개 연장)</td><td>유턴법 개정후 시행규칙 2차 개정에 반영</td></tr>
</table>